

수원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213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2.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류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17. 선고 2020가합831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9. 12. 5. 접수 제384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5.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내 1행의 “택지개발촉진법”을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2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사전 매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언제, 얼마의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하였는지 등 매매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주장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5행 내지 제14면 9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별지

목 록

1. 평택시 대 218.6㎡

(도로명 주소 평택시)

(예정지번 평택시)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92.35㎡

2층 105.21㎡

3층 101.8㎡

4층 89.09㎡